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

1. 개정 사유 및 주요 내용

- 신설된지 2년 미만인 단과대학, 학과 또는 전공에 한하여 학생단체 대표자의 자격 요건 중 ‘임기 개시 시 4학기 이상을 이수’해야 하는 요건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해당 단과대학, 학과 또는 전공에서 학생단체 대표자가 선출될 수 있도록 함(제43조 제6항)

2. 개정 세칙

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3조제6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단과대학,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

부칙(2023. 5. 12. 개정)

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이화여자대학교 학칙시행세칙 중 개정 세칙 신·구조문 대비표

구	신	개정사유및내용
제43조(학생단체 등의 지도) ①~⑤ (생략) ⑥ 학생단체의 모든 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 1. 입후보 당시 총 평균성적이 2.00 이상으로 징계를 받지 아니한 자 2. 임기 개시시 4학기 이상 이수한 자	제43조(학생단체 등의 지도) ①~⑤ (현행과 같음) ⑥ ……다만, 신설된 지 2년 미만인 단과대학, 학과 또는 전공학생회 대표자(공동대표 포함)에게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. 1. …… 2. …… 부칙(2023. 5. 12. 개정) 이 세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	*신설 단과대학, 학과, 또는 전공학생회 대표자에 대하여 제2호를 적용하지 않음을 명시